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년월일 : 2019.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올림픽 유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산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안 제4조~제5조)
- 나. 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안 제6조)
- 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안 제7조)
- 라.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안 제8조)
- 마. 대회관련 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안 제9조)
- 바. 국제행사 등 유치·개최(안 제10조)
- 사. 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67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9. 16. ~ 2019. 10.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담당관-47호, 2019. 9. 10. )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담당관-47호, 2019. 9. 10.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주민복지과-2545호, 2019. 9. 20. )  
개선의견 일부반영(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참여)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이란 평창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구성

**제4조(유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평창올림픽 이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 유산을 전략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 기본계획 추진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림픽유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올림픽기념사업·문화관광·교육체육·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발전과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문화예술·지역개발·체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평창올림픽 유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발굴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전략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3장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 계승·기념**

**제6조(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과 연계하여 평화도시에 대한 미래비전 확산과 평화특례시 설치 등을 통하여 평창올림픽의 정신과 성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① 지역 시민사회 등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평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장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

**제8조(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념재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 ① 군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 중 유산으로 남겨진 부지와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평창군 소유 시설물에 한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념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국제행사 등 유치·개최)**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 등”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유

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행사 등의 개최에 따른 비용
2. 국제행사 등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해외 홍보비용
3. 그 밖에 국제행사 등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행사 등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거쳐 군비를 지원받은 국제행사 등 주관기관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행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① 군수는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올림픽도시 간 문화·관광·체육·회의 등에서 교류(민간단체교류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 다. 약물검사시설
  -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 마. 전기·전자통신시설
  -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폐회식장을 말한다.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붙임 2]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2018평창 기념재단지원, 국제행사 등 유치·개최, 올림픽 도시 간 교류지원  
(제8조, 제10조, 제11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산정함.
-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 예상액 및 소요 자체재원을 감안함.

#### 나. 추계 결과

구 분	비용산출	소요액(백만원)	비 고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평창평화포럼, 올림픽 평화유스캠프 운영, 수호랑 반다비 캠프 운영	23,000	보조금 및 자체자원
국제행사 유치·개최	2021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지원, 국제회의 유치 지원 5회	2,450	보조금 및 자체자원
올림픽 도시 간 교류지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50	자체자원
계		25,500	

※ 사업별 세부내역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 다. 자원조달 방안

- 국도비 확보 및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충당하고자 함.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올림픽기념사업과 권혁영
연락처	(033) 330 -201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b>세 입</b>							
<b>세 출</b>		6,700	4,700	4,700	4,700	4,700	25,500
평창평화포럼 개최		500	500	500	500	500	2,500
올림픽 평화유스캠프 운영		600	600	600	600	600	3,000
수호랑 반다비 캠프운영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국제행사 개최 지원		2,090	90	90	90	90	2,450
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10	10	10	10	10	50
<b>재원 조달</b>		6,700	4,700	4,700	4,700	4,700	25,500
의존 재원	소 계	4,200	3,200	3,200	3,200	3,200	17,000
	보조금	4,200	3,200	3,200	3,200	3,200	17,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0	1,500	1,500	1,500	1,500	8,500
	지방세	2,500	1,500	1,500	1,500	1,500	8,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